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가꾸는 경남교육

2020학년도 **특별교육** · **심리치료** 운영 계획

2020. 3.

2020학년도 특별교육 · 심리치료 운영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I 운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9.10.17.시행)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II 운영 목적 및 기관

1. 운영 목적

○ 위원회 처분에 대한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특별교육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부모	특별교육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2. 운영 기관 구분

	당연 지정 운영기관	심사 지정 운영기관
특별교육	· Wee클래스 · Wee센터 · Wee스쿨 ·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가 및 지자체 운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당연 지정 운영기관 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
심리치료	· Wee클래스 · Wee센터 ·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당연 지정 운영기관 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

III 운영 방침

1.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도모
2. 선도와 회복 중심의 교육적 관점에서 운영
3. 가해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4. 가해학생에 대한 현장 특별교육 및 추수지도 강화
5. 특별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6. 학교폭력 유형별, 비행 유형별 맞춤형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발굴 운영
7.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정 취소
 - 가.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 미이행
 - 나. 운영성과 부실 및 기관 운영 관련 민원 발생
 - 다. 교육기간 중 위탁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안전사고 관련 사안 발생
 - 라. 관리자(대표자), 강사 및 운영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을 시
 - 마. 기타 특별교육·심리치료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
8. 이수기관 교육비 지원(위탁 기관에서 청구)

특별교육	심리치료
- 시간당 4,000원 - 숙박의 경우 1박당 30,000원 추가 ※ 교통비: 개별 부담	- 회당 24,000원 ※ 교통비: 개별 부담

9. 이수기관 운영 자격

특별교육	심리치료
○ 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시설),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상담 관련 기관 중 전문상담사나 청소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가능한 기관	○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 상담경력이 있는 상담 관련 기관 ※ 전문상담사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학 전공자 · 전문상담교사 자격,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1~3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소지하고 상담 및 청소년 교육관련 경력자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병(의)원 전문의에 의한 치료

IV 2020. 운영기관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전화	특별교육 (최대운영시간)	심리치료 (최대운영시간)
1	Wee 클래스	Wee클래스(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따라 부과된(17조3항)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 의뢰 가능 · [교육활동 침해] 1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따라 부과된(18조3항)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 의뢰 가능 ※ 기존대로 타 기관을 통한 이수도 가능 	
2	Wee 스쿨	낙동강학생교육원	720-7260~1	· 학생:30(2박3일)	×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34		· 보호자:6	
3		낙동강학생교육원 진산분원	760-3860~4	기관 문의	×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길 1-80			
4		낙동강학생교육원 칠북분원	586-7956~60	기관 문의	×
		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57			
5	Wee 센터	창원 Wee센터(마산분원)	210-0461~5,7	· 학생: 30	· 학생: 6
		[특별교육]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 보호자: 5	· 보호자: 4
		[심리치료]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2길 3			
6		진주 Wee센터	740-2091~8	· 학생: 20	· 학생: 8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 보호자: 5	· 보호자: 3
7		통영 Wee센터	650-8025~7	· 학생: 25	· 학생: 5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 보호자: 5	· 보호자: 2
8		사천 Wee센터	830-1544~9	· 학생:(중)고24(초)5	· 학생: 5
		사천시 삼상로 85		· 보호자: 5	· 보호자: 5
9		김해 Wee센터	070-8767-7571	· 학생:(중)고30(초)4	· 학생: 5
		김해시 지내동 삼안로 24번길 7		· 보호자: 5	· 보호자: 5
10		밀양 Wee센터	350-1490~7	· 학생:18	· 학생:5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4		· 보호자:5	· 보호자:2
11	거제 Wee센터	636-9670~5	· 학생: 16	· 학생: 8	
	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로13-4		· 보호자: 5	· 보호자: 2	
12	양산 Wee센터	379-3264	· 학생: 18	· 학생: 6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 보호자: 5	· 보호자: 6	
13	의령 Wee센터	570-7131	· 학생: 15	· 학생: 1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		· 보호자: 5	· 보호자: 5	

14	Wee 센터	함안 Wee센터	580-8018	· 학생: 30	· 학생: 10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		· 보호자: 5	· 보호자: 5
15		창녕 Wee센터	530-3508~9	· 학생: 15	· 학생: 12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 보호자: 15	· 보호자: 12
16		고성 Wee센터	673-7042	· 학생: 15	· 학생: 6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9번길 10		· 보호자: 5	· 보호자: 5
17		남해 Wee센터	860-4133	· 학생: 15	· 학생: 10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14		· 보호자: 4	· 보호자: 2
18		하동 Wee센터	880-1933, 1935	· 학생: 15	· 학생: 10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		· 보호자: 4	· 보호자: 2
19		산청 Wee센터	970-3033/7~40	· 학생: 24	· 학생: 10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 보호자: 5	· 보호자: 4
20		함양 Wee센터	960-2742	· 학생: 5	· 학생: 3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 보호자: 4	· 보호자: 2
21	거창 Wee센터	940-6191	· 학생: 6	· 학생: 4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 보호자: 4	· 보호자: 2	
22	합천 Wee센터	930-7060	· 학생: 20	· 학생: 3	
	합천군 합천읍 돌서로 150		· 보호자: 5	· 보호자: 2	
23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711-1388	×	· 학생: 12
		창원시 의창구 시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4층			· 보호자: 6
24		창원(창원)	273-2000	· 학생: 12	· 학생: 12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 보호자: 5	· 보호자: 5
25		창원(마산)	245-7941/7925	· 학생: 12	· 학생: 6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룡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		· 보호자: 10	· 보호자: 5
26		창원(진해)	551-2000	· 학생: 12	· 학생: 12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 보호자: 5	· 보호자: 5
27		진주	744-1128	· 학생: 10	· 학생: 5
		진주시 북장대로 6번길 9, 1층(인사동)		· 보호자: 5	· 보호자: 4
28		사천	835-4199	· 학생: 20	×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 보호자: 6	
29		김해본소/서부상담소	325-2000/330-7920	· 학생: 12	· 학생: 12
		[김해본소]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 [서부]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		· 보호자: 6	· 보호자: 6
30	밀양	355-2000	· 학생: 10	· 학생: 12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 보호자: 10	· 보호자: 6	
31	거제	636-2000	· 학생: 15	×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32	통영	644-2000	×	· 학생: 10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 보호자: 6	

33		양산본소/웅상분소	372-2000/367-1318	· 학생: 18 · 보호자: 5	· 학생: 6 · 보호자: 5
		[양산본소]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웅상분소] 양산시 웅상대로 1009-1 웅상도서관 지하1층			
34		의령	572-2000	· 학생: 50 · 보호자: 5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44 종합사회복지관 3층			
35		함안	583-0924	· 학생: 10 · 보호자: 5	· 학생: 10 · 보호자: 5
		함안군 가야읍 말산 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36	지역	창녕	532-2000	· 학생: 12 · 보호자: 5	· 학생: 12 · 보호자: 5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37	청소년 상담	고성	673-6882	· 학생: 12 · 보호자: 5	· 학생: 12 · 보호자: 5
		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38	복지 센터	남해	863-5279	· 학생: 12 · 보호자: 5	· 학생: 12 · 보호자: 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39		하동	883-3000	· 학생: 12 · 보호자: 3	· 학생: 12 · 보호자: 3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40		함양	963-7922	· 학생: 12 · 보호자: 5	· 학생: 6 · 보호자: 5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41		거창	941-2000	· 학생: 18 · 보호자: 6	· 학생: 10 · 보호자: 4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42		합천	932-5499	· 학생: 20 · 보호자: 10	· 학생: 10 · 보호자: 4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청소년문화의 집 3층			
43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기관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832-9273	· 학생: 15	×
		사천시 문선4길 23			
44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	286-3517	· 학생: 30 · 보호자: 6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			
45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1)971-8502~3	· 학생: 20 · 보호자: 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			
46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52)272-5021	· 학생: 35 · 보호자: 7	×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8 달성빌딩 3층			
47		거제경찰서	639-0292	· 학생: 10	×
		거제시 진목1길 2 여성청소년계			
48		거창경찰서	949-0356	· 학생: 10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여성청소년계			
49		고성경찰서	647-3348	· 학생: 10	×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여성청소년계			
50	김해서부경찰서	310-0163	· 학생: 10	×	
	김해시 계동로 175 여성청소년계				

51		김해중부경찰서	344-8195	· 학생: 10	×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여성청소년계			
52		남해경찰서	860-6247	· 학생: 10	×
		남해군 화전로 89 여성청소년계			
53		마산동부경찰서	233-7242	· 학생: 10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여성청소년계			
54		마산중부경찰서	240-2389	· 학생: 10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여성청소년계			
55		밀양경찰서	350-0358	· 학생: 10	×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여성청소년계			
56		사천경찰서	850-7117	· 학생: 10	×
		사천시 남일로 37 여성청소년계			
57		산청경찰서	970-3259	· 학생: 10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1 여성청소년계			
58		양산경찰서	392-0082	· 학생: 10	×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여성청소년계(4층)			
59	국가 및	의령경찰서	570-0345	· 학생: 10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 여성청소년계			
60	지자체	진주경찰서	750-0272	· 학생: 10	×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여성청소년계			
61	운영 기관	진해경찰서	549-8143	· 학생: 10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여성청소년계			
62		창녕경찰서	520-9255	· 학생: 10	×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여성청소년계			
63		창원서부경찰서	290-0209	· 학생: 10	×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여성청소년계			
64		창원중부경찰서	233-0114	· 학생: 10	×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여성청소년계			
65		통영경찰서	640-0149	· 학생: 10	×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여성청소년계			
66		하동경찰서	880-3119	· 학생: 10	×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여성청소년계			
67		함안경찰서	589-8347	· 학생: 10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 여성청소년계			
68		함양경찰서	960-1347	· 학생: 10	×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여성청소년계			
69		합천경찰서	930-6199	· 학생: 10	×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여성청소년계			

70	민간 단체 위탁 기관	푸른나무청예단 경남지부	263-1388	· 학생: 30 · 보호자: 10	· 학생: 20 · 보호자: 6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31 5층(도계동, 경도빌딩)			
71		다운심리상담센터	264-3343	· 학생: 30 · 보호자: 5	· 학생: 10 · 보호자: 5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3번길 28 우영프라자 521호			
72		김해교육문화연구소	336-1027	· 학생: 30 · 보호자: 10	· 학생: 10 · 보호자: 5
		김해시 내외중앙로 50 정우센터빌딩 801호			
73		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	331-0505	· 학생: 60 · 보호자: 30	· 학생: 60 · 보호자: 30
		김해시 김해대로 2421 2층			
74		한국통합TA연구소	312-1242	×	· 학생: 20 · 보호자: 6
		김해시 활천로 233 더블리안 402호			
75		(사)한국청소년문화원	387-6824	· 학생: 30 · 보호자: 5	· 학생: 10 · 보호자: 6
		양산시 덕명로 322, 상가동 4층			
76		푸른나무 청예단 진주시천지부	748-0388	· 학생: 30 · 보호자: 10	· 학생: 20 · 보호자: 20
		진주시 진양호로 341			
77	심리상담센터 본	642-4690	· 학생: 30 · 보호자: 10	· 학생: 20 · 보호자: 6	
	통영시 달포큰길 70 2층				
78	두리심리상담연구소	010-3122-5027	· 학생: 30 · 보호자: 10	· 학생: 20 · 보호자: 6	
	통영시 용남면 화포1길 66				
79	종교 단체	통도사	384-7085	템플스테이 기관 문의	×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80	종교 단체	대원사	974-1112	템플스테이 기관 문의	×
		산청군 삼장면 유평로 453			
특별교육 운영 기관 수 / 심리치료 운영 기관 수				76	45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신청 시 운영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유선)

※ 사안의 중대성, 대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운영 시간 조정 가능

■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 교육 대상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특별교육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 교육 시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선도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

3. 교육 방법

- 특별교육 - 1:다수 운영 가능
- 심리치료 - 1:1 운영 원칙

4. 교육 내용

○ 이수 필수내용: 50% 구성

① 분노조절	②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	③ 폭력 관련 법교육
④ 자기이해	⑤ 공격성 조절	⑥ 행동수정
⑦ 충동성 조절	⑧ 자기통제력 향상	⑨ 감정다루기 훈련

등의 주제로 심리치료, 자기성찰,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 중심 구안

○ 기관별 특색프로그램 : 50% 구성

- 기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학칙 위반의 경우 준법 관련 교육,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내용 안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

○ 성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에 성인식 교정, 피해자 공감,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 재발 방지 계획 세우기 등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포함

■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 교육 대상

학교폭력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법 등
- 교권 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 내용 안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

3. 운영 방향

- 기관 특성과 폭력 사안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해 주말, 야간교육 개설

4. [학교폭력]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시간

조치사항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4시간 이내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 학부모·학생 공동교육 가능	·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 제출 불요 - 위탁기관 이수 결과 보고로 대체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5시간 이상		

5.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시간

-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름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방법

1. 실시 단계

- ① 위원회에서 가해학생·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결정
- ② 학교에서 유선으로 교육감지정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위탁기관에 이수 일정 협의
- ③ 학교에서 위탁기관 및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이수신청서(붙임3)' 제출
- ④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 ※ 보호자가 특별교육위탁기관 입·퇴소 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시 학교 관계자(담임이나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동행
- ⑤ 학기별 이수현황 제출(연 2회): (붙임4) 엑셀 서식

2. 추수 지도 단계

- 학급 복귀 시 반드시 학교별 추수 지도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종결 처리
- 추수 지도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꿈키움교실 담당교사, 진로상담교사, 외부전문가의 1:1 멘토링으로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추가 치료·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생과 보호자 동의를 받아 보완 치료·교육 실시

3. 운영 방법 및 행정 사항

-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관과 이수 일정을 협의 후 신청서 발송(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및 기관), 보호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안내
- 운영기관에서는 학생 이수 상황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서(기관별 자체 보관)를 학교로 송부
- 학교는 학기별 이수현황(붙임 4)을 지역교육청으로 제출(2020.8.21.-1차, 2021.2.17.-2차)
-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이수현황(붙임4)을 취합하여 도교육청 민주시민과로 자료 제출(2020. 8. 28.-1차, 2021. 2. 24.-2차)
-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불응하고 3개월이 경과할 경우,

학교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현황, 서식3)하고 지속적 이수 요청

- 교육감의 이수 요청에도 불응하는 경우, 교육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등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의 위치에 있는 사람

4. 과태료 부과 절차

- 학교폭력: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실시	과태료 부과
시행 기관	·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
내용	·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수 서면 통보	· (학교장)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심리치료) 실시 서면 통보 (기한: 3개월 이내) ↓ · (학교장)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교육 이수에 불응할 경우, 교육감에게 명단 통보 ↓ · (교육감)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4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이수 서면 안내 (기한: 1개월 이내)	· (교육감) 미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 (학부모)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수하거나 의견 제출 ↓ · (교육감)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 15일간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기중 부과

VI 기대효과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선도 대상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치료·교육 지원으로 사안 재발 방지
2.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을 감소를 통해 가해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VII 관련 서식

[서식1]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통보

귀하의 자녀인 홍△△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일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 ○○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홍△△의 보호자인 귀하도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홍△△과 함께 ○○○교육원(Wee센터, ○○센터 등 지정장소 명기)에서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이수 완료기간	교육이수 통보일 ~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관련 문의	○○○○학교 인성부장 ○○○ 연락처: 000-0000
과태료 부과일	교육이수 통보일 ~ 4개월 후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020년 월 일

○○○○학교장 (인)

[서식1-1]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 통보

귀하의 자녀인 홍△△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일과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조치 ○○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홍△△의 보호자인 귀하도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홍△△과 함께 ○○○교육원(Wee센터, ○○센터 등 지정장소 명기)에서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특별교육(심리치료)을 ○○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교육(심리치료)을 받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이수 완료기간	교육이수 통보일 ~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관련 문의	○○○○학교 인성부장 ○○○ 연락처: 000-0000
과태료 부과일	교육이수 통보일 ~ 4개월 후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1항)

2020년 월 일

○○○○학교장 (인)

[서식 2] 자료 제출 시에는 엑셀파일 제출(붙임3 별첨)

특별교육 · 심리치료 이수 신청서

순	구분 (학교폭력) (학생징계) (교육활동 침해)	내용	소속 학교	이수 신청 현황														
				학생									보호자					
				성명	학년	성별	연락처	위원회 개최일	조치사항	교육기관	신청 사유	교육기간 (시간)	성명	관계	연락처	교육기관	교육기간 (시간)	
1	학교폭력	특별교육	○○초	김○○	3	남	010-0000-0000	2020.00.00.	1, 2, 4	○○ Wee센터	금품 갈취	2020.00.00. ~00.00. (0일,30시간)	이○○	모	010-0000-0000	○○ Wee센터	2020.00.00. ~00.00. (0일,10시간)	
2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																
계																		

- ※ 신청방법 : 단위 학교에서는 특별교육 · 심리치료 이수 기관에 우선으로 이수 일정을 협의한 후 **위의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이수 예정 기관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으로 제출(이수 결과 현황은 학기당 1회 제출)**
- ※ 보호자의 경우 **미이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보호자(학부모, 친척, 가족, 법정대리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이수하면 됨)의 특별교육 · 심리치료 이수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학생이 **전학, 유예, 자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종료 후 처리가 원칙**
- ※ 구분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학교폭력**’, 선도(징계)위원회 조치는 ‘**학생징계**’,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선택
- ※ 내용란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중 선택

[서식 3]

<보호자 미이수자 현황>

- 3개월 내 미이수 시 다음날 즉시 학교장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보고 -

보호자 특별교육 · 심리치료 미이수자 현황

학교명	○○○○학교	담당자	○○○(연락처:010-0000-0000)
-----	--------	-----	------------------------

연 번	구 분	내 용	학 생		보 호 자			연 락 처	위 원 회 개 최 일	학 부 모 교 육 통 보 기 간 (3 개 월)
			학 반	이 름	관 계	이 름	교 육 시 간			
1	학교폭력	특별교육	2-3	○○○	모	○○○	5	010-0000 -0000	2020. 00.00.	2020.00.00. ~2020.00.00.
2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								

※ 이수 계획(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

- 기관명:
- 예정 일자:
- 참고 사항:

2020년 월 일

확인자 : ○○○○ 학 교 장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